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감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강화 〉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55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민감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강화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임태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2025. 11. 6.
3. 회 부 일: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등 제한된 조건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한 뒤 분석이나 저장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커 국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

친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8제1항, 제28조의8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민감정보의 국외이전 제한 강화

- 개정안은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¹⁾의 국외 이전은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하여 허용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8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u>이전</u>)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개인정보</u> 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u>이전 제한</u> 등) ① ----- ----- ----- ----- ----- ----- ----- ~~민감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 ----- -----.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 5. (현행과 같음)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이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현행	개정안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u>단서</u>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6. (생략) 7. <u>제28조의8제1항</u>(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8. 9. (생략) ② ~ ⑩ (생략)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u>을 거친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u> ⑤ ----- -----<u>단서 및 제4항</u>----- ----- ----- ----- ----- ----- -----. (중간 생략)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28조의8제1항 · 제4항</u>----- ----- ----- 8. 9.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

현행	개정안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 10. (생략)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제28조의8제1항 · 제4항(제26조 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u> 9. · 10.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별도의 동의, 법률이나 조약, 인증이나 동등성 인정²⁾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법 제28조의8제1항).

□ 그런데 최근 일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전자 정보 등 고도의 민감정보를 국내에서 수집한 뒤 분석이나 저장 등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등 국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었음³⁾.

1)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

2) 동등성 인정이란,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인지 확인·인정하는 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를 말함.

3) 한국인 유전체, 中 기업이 분석하고 있다…“유출 땀 안보 위협”, 조선일보, 2025. 8. 5.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5/08/05/MZ6TNCOF4RBSRDQDQDM3QLTBHY/>)

○ 생체정보 등의 바이오 빅데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국외로 이전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유전자 정보 등 민감정보는 별도의 동의나, 개별 법률상 근거,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내 보호수준과 동등한 수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국외 이전을 금지하되,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민감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는 그 특수성⁴⁾으로 인해 오·남용 및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보다 파급효과가 크고, 생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생체정보 유출 및 위·변조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국외 이전 요건을 제한하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유전자 정보, 생체정보는 그 자체로 식별이 가능하고(유일성), 변경이 불가능한 특성(불변성)을 가지고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보주체가 자신의 생체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안녕이라는 목적을 이유로 이를 제한한다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민감정보에는 유전자 정보나 생체정보 외에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범죄경력자료, 인종 등의 정보도 포함됨. 생체정보 등 외에 다른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국외 이전 제한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생체정보에 한정해서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면 이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거나, 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⁵⁾ 등 개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14.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7. “개인식별정보”란 연구대상자와 배아·난자·정자 또는 인체유래물의 기증자(이하 “연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8. “개인정보”란 개인식별정보, 유전정보 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인간대상연구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인간대상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 법률에서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셋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임. 경찰청에서는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하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필요한 경우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개정안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① 정보주체 의사에 반하는 국외 이전 제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약화, ②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다른 법률·조약 등과의 적용상 혼란, ③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기준으로 국외 이전 여부를 판단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동등성 등에 대한 검증 약화 및 보호위원회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4